정령 제22호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내각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72호)의 일부 시행에 따라, 그리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 제2조 제3항, 제4조 제2항(동법 제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2항(동법 제1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7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55조 제3항 및 제58조의 7 제2항(동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6년 정령 제2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다음 목차, 장명 및 절명을 붙인다.

목차

1.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 정의(제1조-제3조)
3. 방문판매(제4조-제7조)
4. 통신판매(제8조)
5. 전화권유판매(제9조 · 제10조)
6. 잡칙(제11조-제20조)
7. 연쇄판매거래(제21조-제23조)
8. 특정 연속적 임무제공(제24조-제31조)
9.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제32조 · 제33조)
10. 방문구입(제34조-제37조)
11. 잡칙(제38조-제43조)

부칙

제1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정의

제1조 제1호 중 “제12조의 3 제1항”을 “제4조 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또는 전단”을 “또는 전단”으로, “배포하여”를 “배포하거나 또는 광고를 신문, 잡지, 그 외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또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웹페이지 등(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열람용으로 제공되는 전자적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그 집합물을 말한다. 제19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로 수정한다.

제3조 다음에 다음 절명을 붙인다.

제2절 방문판매

제3조의 2부터 제3조의 4까지 삭제한다.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4조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무성령 로 정하는 것(이하, “서면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얻는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법 제4 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사항이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한다.

4. 전3항의 규정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전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구매자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 갱신한다.

제2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4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41조로 하고, 제17조의 2를 제4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39조로 하고, 제16조의 6을 제38조로 한다.

제16조의 5 제2호 및 제3호 중 “제58조의 7부터 제58조의 9까지”를 “제58조의 7 제1항, 또는 제2항, 제58조의 9”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38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 장 이름을 붙인다.

제6장 잡칙

제16 조의 4 중 “제3 조의 4”를 “제7조”로,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을 “동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으로 개정하며, 동조를 제36조로 한다.

제16조의 3 제1호 중 “(이륜인 것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를 제34 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35조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구입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사전에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사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얻는다.

2. 구입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58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신청 후에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구입업자는 법 제58조의 7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사항이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한다.

4 전3항의 규정은 법 제58조의 8 제3항에서 법 제58조의 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전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매매계약 상대방”으로 갱신한다.

제16조의 2 중 “제3조의 4”를 “제7조”로,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을 “동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으로 갱신하고, 동조를 제33조로 하며, 동조 다음에 다음 장명을 붙인다.

제5장 방문구매

제16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장명 및 1조를 추가한다.

제4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32조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과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내고,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얻는다.

2.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실시하는 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승낙과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판매 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55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했을 때는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이 해당 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 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15조를 제30조로 하고, 제40조를 제29조로 한다.

“동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3조를 제27조로 하며,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26조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에 관한 특정 연속적 역무를 제공 받으려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구매하려는 자, 특정 계속적인 역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인 역무를 제공 받을 권리의 구매자(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 받으려는 자 등)에 대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 받으려는 자 등으로부터 서면 등에 따라 얻는다.

2.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 승낙에 관한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등으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아닌 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 등으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4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의 구매자에 대해, 해당 사항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한다.

제1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0조의 3 중 “손상된”을 “훼손된”으로 개정하며, 동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 장명을 붙인다.

제3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제10 조의 2 중 “제3 조의 4”를 “제7조”로,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을 “동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으로 개정하며, 동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를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0조 제1항”으로 개정하여, 동조를 제20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의 장명 및 1조를 추가한다.

제2장 연쇄판매거래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21조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연쇄판매업을 실시하는 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에 관한 연쇄판매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연쇄판매계약의 상대방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등에 따라 얻는다.

2.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승낙에 관한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연쇄판매거래에 따른 특정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쇄판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3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이 해당 연쇄판매계약 상대방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한다.

제9조 중 “또는 전단”을 “또는 전단”으로, “배포하여”를 “배포하거나 광고를 신문, 잡지 그 외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또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웹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로 갱신하며, 동조를 제19조로 한다.

제8조 제2호 및 제3 호 중 “제4조, 제5조”를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변경하고, 동조를 제18조로 한다.

제7조를 제17조로 하고, 제6조의 4를 제16조로 하며, 제6조의 3을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 2 중 “이 조” 다음에 “및 제34조 제1호”를 추가하고, “동호”를 “동항 제1호”로 개정하며, 동조를 제14조로 한다.

제6조 앞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중 “제16조의 5 제4호”를 “제37조 제4호”로 개정하며, 동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앞에 표제로서 “(계약 신청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역무의 제공 등)”을 붙인다.

제5조의 2를 제12조로 하고,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

(권유 목적을 말하지 않는 유인 방법)

제5조 법 제6조 제4항, 제34조 제4항 및 제52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전화, 우편, 서신편, 전보, 팩시밀리 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또는 전단 또는 브로셔를 배포하거나 확성기로 주거 밖에서 호출하거나 주거를 방문하여 영업소 기타 특정 장소로의 방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제6조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은 사용인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일.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이.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제23조 제1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 제47조 제1항 전단, 제57조 제1 항 전단 또는 제58조의 1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정지가 명령된 업무를 통괄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전호에 열거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7조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임원(동조 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사용인(전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을 말하며,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 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기타 법인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의 방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기타 법인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절 통신판매

제8조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과 관련된 신청을 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신청 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얻은 것으로 한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전화권유판매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9조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과 관련된 신청을 한 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사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얻는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사항이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전3항의 규정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전3항 중 “신청을 한 자”란 “구매자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 갱신한다.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10조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과 관련된 신청을 한 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나타낸 후,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따라 얻어야 한다.

2.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사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승낙에 관한 신청을 한 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신청을 한 자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잡칙

부칙 제2항 중 “제5조에”를 “제11조에”로, 제5조의 2를 제12조로 개정한다.

부칙 제3항 중 “제6조의 3”을 “제15조”로 개정한다.

별표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 2”를 “제11조, 제12조”로 개정하며, 동표 제4호 중 “제42호”를 “제40호”로 개정하고, 동표 중 제28호를 삭제하고, 제27호를 제28호로 하며, 제8호에서 제26호까지 1호씩 내리고, 제7호의 2를 제8호로 한다.

별표 제2중 제30호를 삭제하고, 제31호를 제30 호로 하며, 제32호에서 제35호까지 1호씩 올리고, 제36호를 삭제하며, 제37호를 제35호로 하고, 제38호에서 제51호까지 2호씩 올린다.

별표 제3중 “제6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하며, 동표 제1호 중 “한정한다” 아래에 “. 별표 제5 제1호 “나” 및 제2호 “나”에서 같다”를 추가한다.

별표 제4중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를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로 수정한다.

별표 제5중 “제14조”를 “제29조”로 개정하고, 동표 제1 호 “나” 및 제2호 “나” 중 “(일반의 음식 용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삭제한다.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2조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6년 정령 제34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 1조씩 내리며, 제2조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 관한 절차 등)

제3조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예탁 등 거래업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승낙과 관련된 고객 또는 예탁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한 후, 해당 고객 또는 예탁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다음 항에서 “서면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얻는다.

2. 예탁 등 거래업자는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승낙과 관련된 고객 또는 예탁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해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신청 후에 해당 고객 또는 예탁자로부터 다시 전항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탁 등 거래업자는 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예탁자에게 제공했을 때, 해당 예탁자에 대해, 해당 사항이 해당 위탁자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항의 열람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3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 계약법 및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의 일부 개정)

2. 소비자 계약법 및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련 정령(2023년 정령 제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 제50 호의 개정 규정 중 “별표 제2 제50호”를 “별표 제2 제48호”로 개정한다.

이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판매업자 등이 매매계약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교부하는 서면 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승낙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